



14 재판국 보고

제105회기 재판국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국 장 정진모
서 기 임재호

1. 조직

- 1) 임 원 : 국장 정진모, 서기 임재호, 회계 김봉중, 총무 서만중
- 2) 국 원 : 김정식 정영기 남서호 송기섭 이진철 신영수 박정수 박경일 현상오 전이탁 서현기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20. 10. 22(목) 10:4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제105회기 수입사건 '경남노회 이승기 씨 외 21인의 경남노회 구영생 씨에 대한 소원' 건은 당사자가 '소원 취하서'를 제출하였기에 '기각'하기로 하다.
 - ② 105회기 재판국 수입사건들과 관련하여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01조에 의거, 총회재판국으로 재판 관련 서류(기록) 일체를 제출하도록 해 노회에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 ③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인 상소, 소원 건에 대하여는 총회임원회나 화해중재위원회가 취급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단, 상소 및 소원을 하기 전이나 재판국의 요청이 있을 시 취급하도록 명시하기로 하다).
 - ④ 현의부가 총회로 접수되는 상소, 소원 건을 서류 및 절차로 심사하지 않고, 권징조례에 의거 내용을 판단하여 처리하는 관행에 대하여 시정 및 해 사건들을 재판국으로 이첩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 ⑤ 상기 공문안들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⑥ 105회기 총회재판국 워크숍은 유인물(추진계획안)대로 진행하기로 하다.
 - ⑦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재판국 회의로 정례화 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는 11월 12일(목)에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20. 11. 19(목) 10:4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총회판결문 관련 제105회 총회결의사항을 확인하다.
 - ② 제105회기 재판국 수입사건들과 관련하여 해 노회(중부산노회, 경서노회, 대구노회, 평남노회)

회, 관서노회) 재판 기록을 받아 심리하기로 가결하다.

- ③ 차기 회의는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30 임원회로, 오전 10:40 전체회의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3) 제3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3. 4(목) 10:4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105회기 감사부 중간감사 요청은 재정감사는 받되 행정감사는 재판 중이므로 불가함을 통지하도록 하다.
- ② 경서노회 임은식 씨 외 1인의 경서노회 계성인 씨에 대한 상소는 서기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화해·조정위원으로 하여금 화해·조정토록 결의하다.
- 가. 상소인인 임은식 씨는 사망한 직전당회장이 주재한 당회에서 선곡교회의 사택 입주와 강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나, 선곡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한 사실이 없기에 직전 당회장의 사망 후에도 사택점유, 강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으며, 시찰회에 경유된 담임목사청빙 문서도 공동의회의 결의에 근거한 서류가 아니며 당회장이 제출한 서류가 아님을 확인하다.
- 나. 소속치리회가 상이한 임은식 씨(경서노회)와 강수영 씨(선곡교회)에 대한 고소장을 별건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동일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다.
- 다. 피고소인을 '선곡교회장로'로 명시함으로써 재판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을 확인하다.
- 라. 강수영 씨에 대한 위탁판결청원서도 부존재함을 확인하다.
- 마. 2019년 3월 4일 죄증설명서에 석명한 혐의는 임은식 씨에 대한 혐의임을 확인하다.
- 바. 2019년 3월 4일 제출한 죄증설명서 이외에 다른 1건의 죄증설명서(2019.10.29)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권징조례 16조에 저촉됨을 확인하다.
- 사. 경서노회 재판국 설치에 관한 노회회의록이 없음을 확인하다.
- 아. 화해·조정위원 : 위원장 : 정진모, 서기 : 서만중, 회계 : 박정수, 위원 : 김정식, 박경일
- ③ 대구노회 성명교회 이건설 씨의 대구노회 성명교회 조용태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는 서기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 가. 성명교회 조용태 씨 외 3인을 원고로 한 이건설씨의 (대구)노회위탁판결재판은 성명교회 당회의 노회위탁판결 결의와 성명교회 당회장의 노회위탁판결청원서가 없음을 확인하다 (권징조례 78조, 79조).
- 나. 원고인 조용태 씨 외 3인이 제출한 '노회위탁판결 이유서'도 제출된 날짜가 미기재 되었고 노회 재판국 설치 이후에 노회(재판국)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범죄 혐의의 일부는 이미 104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범죄임을 확인하다.
- ④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정복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는 서기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화해·조정위원으로 하여금 화해·조정토록 결의하다.
- 가. 101회 총회(2017년)는 평남노회에 노회원인 조청래 씨에 대한 면직을 원인무효로 하는 99회 총회(2015년), 100회 총회(2016년)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적시하여 조청래 씨의 면직을 원인무효로 결의하였으나 평남노회는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다.



- 나. 2018년 5월 18일 구미 신평교회(구미노회) 이상진 씨의 진정서로 상소인을 또 다시 기소하여 면직했으나 평남노회 재판국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권징조례117조) 확인하다.
- 다. 화해·조정위원: 위원장: 남서호, 서기: 임재호, 회계: 김봉중, 위원: 정영기, 신영수
- ⑤ 관서노회 에덴교회 이평규 씨 외 3인의 관서노회 광성덕 씨에 대한 상소는 서기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 가. 당회판결은 2020년 3월 14일이며 상소일은 2020년 4월 27일로 보아 상소기간을 초과했음을 확인하다(권징조례 96조).
 - 나. 기소된 피고를 '기소유예'로 판결한 것은 권징조례와 관련 없는 책벌이며, 사법으로도 위법적인 판결임을 확인하다(권징조례 35조).
 - 다. 상소장에 피상소인이 미기록되었음을 확인하다.
- ⑥ 관서노회 에덴교회 김은태 씨의 관서노회 광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서기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 가. 당회판결은 2020년 3월 14일이며 상소일은 2020년 4월 27일로 보아 상소기간을 초과했음을 확인하다(권징조례 96조).
 - 나. 상소인의 '제명'판결의 법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다(권징조례 34조).
 - 다. 상소장에 피상소인이 미기록되었음을 확인하다.
- ⑦ 관서노회 에덴교회 심장섭 씨의 관서노회 광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서기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 가. 당회판결은 2020년 3월 14일이며 상소일은 2020년 4월 27일로 보아 상소기간을 초과했음을 확인하다(권징조례 96조).
 - 나. 상소인의 '면직'판결의 법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다(권징조례 34조).
 - 다. 상소장에 피상소인이 미기록되었음을 확인하다.
- ⑧ 차기회의는 4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개최토록 하다.

(4) 제4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4. 15(목) 10:4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관서노회 에덴교회 김은태 씨의 상소관련 의견서는 접수하여 재판에 참고토록 하다.
- ② 관서노회 에덴교회의 당회재판 기록 및 당회의 의견서는 접수하여 재판에 참고토록 하다.
- ③ 경서노회 임은식 씨의 상소와 평남노회 조정래 씨의 상소관련 화해·조정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화해·조정을 계속토록 하다.
- ④ 관서노회 에덴교회 김은태 씨 외 2건의 상소는 당사자를 불러 화해·조정을 하기로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다.
 - 위원장: 정진모 목사, 서기: 임재호 목사, 회계: 김봉중 장로, 위원: 송기섭 목사, 현상오 장로
- ⑤ 산서노회 이능규 씨의 재심 지시의 건은 해 노회(산서노회)에 공문을 보내 재 촉구키로 하다.
- ⑥ 차기회의는 5월 20일(목) 10시 30분에 회집토록 하다.

(5) 제5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5. 20(목) 10:4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에덴교회 김은태 씨의 상소 건에 대한 김은태의 추가자료 제출 건은 담임목사 광성덕 씨의 목사부부의 (새로운)범죄혐의에 대한 것으로서 본 상소건과 별건임을 확인하다.
- ② 관서노회의 에덴교회 상소 건과 관련 된 관서노회의 입장 추가보고 3건은 받아 재판에 참조토록 하다.
- ③ 관서노회 에덴교회 이평규 씨의 5인의 상소 3건과 관련 된 에덴교회 담임목사 광성덕씨의 무혐의 처분(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결정서는 받아 재판에 참조토록 하다.
- ④ 산서노회의 (총회)재판국 권한에 대한 이의 건은 받아 재판에 참고토록 하고 2021년 5월 28일 까지 이능규 씨에 대한 재심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다.
- ⑤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정복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관련 소위원회 보고
- 상소인 조청래 씨와 피상소인 평남노회장(김승규)은 상호 합의서(별첨)에 서명하고 조청래 씨로 하여금 상소취하서(별첨)를 제출받아 종결하였음을(제3차 조정위, 2021.4.20.) 보고 받다.
- ⑥ 관서노회 에덴교회 상소(3건)관련 건은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위원회 보고를 다음과 같이 받고 판결로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하다.
가) 에덴교회 당회장 광성덕 씨와 당회서기 정동환 씨를 출석시켜 화해·조정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별첨과 같이 서약서를 제출받다.
나) 상소인 이평규, 심장섭 씨를 출석시켜 화해·조정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자신들이 본 재판국에 출석한 목적은 에덴교회 당회장 광성덕 씨와 당회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며 거부 의사를 표하다(제1차 조정위, 2021.5.13.).
- ⑦ 대구노회 성명교회 이진섭씨의 상소 건은 화해·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원, 피고를 6월 10일(목) 출석요구하기로 하다.
- 위원장 정진모, 서기 임재호, 회계 김봉중, 위원 이진철, 전이탁
- ⑧ 차기회의는 6.17(목) 10시 40분 총회회의실에서 하기로 하다.

(6) 제6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6. 17(목) 10:4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대구노회 성명교회 이진섭 씨 상소관련 소위원회의 보고
가) 상소인과 원심원고인들이 상호 화해와 합의(별첨)를 했고
나) 원심재판국인 대구노회도 재심을 통하여 이진섭 씨의 시벌을 원인무효처리 하기로 서약서(별첨)를 제출했으며
다) 이진섭 씨는 대구노회의 재심 종료 후 본 재판국에 상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했음을 보고 받다.
- ② 판결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다.
위원: 정진모 목사, 임재호 목사, 김봉중 장로, 서만중 목사, 정영기 목사, 남서호 목사, 신영수 장로
- ③ 경서노회 임은식 씨의 상소와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상소관련 화해·조정위원회의 보고를 받



고 화해·조정을 계속토록 하다.

- ④ 관서노회 에덴교회 김은태 씨 외 2건의 상소는 당사자를 불러 화해·조정을 하기로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다.
- 위원장: 정진모 목사, 서기: 임재호 목사, 회계: 김봉중 장로, 위원: 송기섭 목사, 현상오 장로
- ⑤ 추가경정예산 1천만원을 청원기로 하다.
- ⑥ 차기 전체회의는 2021년 9월 2일(목) ~ 3일(금) 하기로 하되 장소는 국장에게 위임하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 2020. 10. 12(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105회기 재판국 수임사건들은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차기 전체회의 시 국원들에게 배부키로 하다.
- ② 현의부가 총회로 접수되는 재판사건들을 서류 및 절차로 심사하지 않고, 권징조례를 근거로 내용을 판단하여 처리하는 관행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기로 하다.
- ③ 105회기 재판국 워크숍은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다.
가. 기간: 총회장, 강사 일정에 따라 차후 결정
나. 장소: 계룡스파텔
다. 개회예배 설교는 총회장 소강석 목사에게, 폐회예배 설교는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에게 의뢰
라. 강의: 교회법관련은 한기승 목사, 사회법관련은 총회자문 변호사, 105회기 재판국 운영 관련은 재판국장에게 의뢰
마. 구체적 순서는 서기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20. 10. 22(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5회기 수임사건 '경남노회 이승기 씨 외 21인의 경남노회 구영생 씨에 대한 소원'과 관련하여 소원인 이승기 목사가 제출한 소원취하서는 접수하여 본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② 105회기 재판국 회의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로 정례화하는 안을 본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20. 11. 19(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판결문 관련 제105회 총회결의사항을 확인하다.
- ② 제105회기 재판국 수임사건들과 관련하여 해 노회 재판 기록 일체를 확인하다.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21. 2. 4(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제105회기 재판국 수입사건(1~4번) 심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다.

가. 경서노회 임은식 씨 외 1인의 경서노회 계성인 씨에 대한 상소

상소인인 임은식 씨는 사망한 직전당회장이 주재한 당회에서 선곡교회의 사택입주와 강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나, 선곡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한 사실이 없기에 직전 당회장의 사망 후에도 사택점유, 강도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으며, 시찰회에 경유된 담임목사청빙문서도 공동의회의 결의에 근거한 서류가 아니며 당회장이 제출한 서류가 아님을 확인하다.

나. 대구노회 성명교회 이건설 씨의 대구노회 성명교회 조용태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

성명교회 조용태 씨 외 3인을 원고로 한 이건설 씨의 (대구)노회위탁판결재판은 성명교회 당회의 노회위탁판결 결의와 성명교회 당회장의 노회위탁판결청원서가 없고, 원고인 조용태 씨 외 3인이 제출한 '노회위탁판결 이유서'도 제출된 날짜가 미기재되었고, 노회 재판국 설치 이후에 노회(재판국)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범죄 혐의의 일부는 이미 104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임을 확인하다.

다.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정복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

101회총회(2017년)는 평남노회의 노회원인 조청래 씨에 대한 면직을 원인무효로 하는 99회총회(2015년), 100회총회(2016년)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적시하여 조청래 씨의 면직을 원인무효로 결의하였으나 평남노회는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8년 5월 18일 구미 신평교회(구미노회) 이상진 씨의 진정서로 상소인을 또 다시 기소하여 면직했으나 평남노회 재판국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으로(권징조례117조) 상소인과 평남노회를 소환하여 조정(합의)을 하기로 하다.

② 차기 임원회는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총회회의실에 모이기로 결의하다.

③ 재판국 전체회의는 3월 4일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단 코로나 19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 2021. 2. 18(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제105회기 재판국 수입사건 심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다.

가. 경서노회 임은식 씨 외 1인의 경서노회 계성인 씨에 대한 상소

a. 소속치리회가 상이한 임은식 씨(경서노회)와 강수영 씨(선곡교회)에 대한 고소장을 별건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동일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다.

b. 피고소인을 '선곡교회장로'로 명시함으로써 재판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을 확인하다.

c. 강수영 씨에 대한 위탁재판청원서도 부존재함을 확인하다.

d. 2019년 3월 4일 죄증설명서에 석명한 혐의는 임은식 씨에 대한 혐의임을 확인하다.

e. 2019년 3월 4일 제출한 죄증설명서 이외에 다른 1건의 죄증설명서(2019.10.29.)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권징조례 16조에 저촉됨을 확인하다.



- f. 경서노회 재판국 설치에 대한 노회회의록이 없음을 확인하다.
- 나. 관서노회 에덴교회 이평규 씨 외 3인의 관서노회곽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 a. 당회판결은 2020년 3월 14일이며 상소일은 2020년 4월 27일로 보아 상소기간을 초과했음을 확인하다(권징조례96조).
 - b. 기소된 피고를 '기소유예'로 판결한 것은 권징조례와 관련 없는 책벌이며, 사법으로도 위법적인 판결임을 확인하다(권징조례 35조).
 - c. 상소장에 피상소인이 미기록 되었음을 확인하다.
- 다. 관서노회 에덴교회 김은태 씨의 관서노회 곽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 a. 당회판결은 2020년 3월 14일이며 상소일은 2020년 4월 27일로 보아 상소기간을 초과했음을 확인하다(권징조례96조).
 - b. 상소인의 '제명'판결의 법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다(권징조례 34조).
 - c. 상소장에 피상소인이 미기록 되었음을 확인하다.
- 라. 관서노회 에덴교회 심장섭 씨의 관서노회 곽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 a. 당회판결은 2020년 3월 14일이며 상소일은 2020년 4월 27일로 보아 상소기간을 초과했음을 확인하다(권징조례96조).
 - b. 상소인의 '면직'판결의 법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다(권징조례 34조).
 - c. 상소장에 피상소인이 미기록 되었음을 확인하다.
- ② 관서노회 에덴교회의 재판관련 당회록과 재판기록을 제출토록 하다.
- ③ 헌의부에 접수된 안건을 본 재판국으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다.
- ④ 재판국 전체회의를 3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개최함을 통지하도록 하다.
- ⑤ 차기 임원회는 3월 25일(목) 10시 30분에 개최토록 하다.

(6) 제6차 임원회

- ☞ 일 시 : 2021. 3. 4(목) 10: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제105회기 감사부 중간감사 요청은 재정감사는 받되 행정감사는 재판 중이므로 불가함을 통지하기로 하다.
 - ② 경서노회 임은식 씨의 상소에 대하여 화해·조정위원으로 하여금 화해·조정토록 결의하다.
- 위원: 정진모, 서만중, 김정식, 박정수, 박경일
 - ③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상소에 대하여 화해·조정위원으로 하여금 화해·조정토록 결의하다.
- 위원: 임재호, 김봉중, 정영기, 남서호, 신영수
 - ④ 차기 임원회는 3월 25일(목) 10시 30분에 회집토록 하다.

(7) 제7차 임원회

- ☞ 일 시 : 2021. 3. 25(목) 10: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관서노회 에덴교회 김은태 씨의 관서노회 곽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의 상소인인 김은태 씨의 의견서(별첨)는 재판에 참고하도록 하다.
 - ② 관서노회 에덴교회 이평규 씨 외 3인의 관서노회 곽성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외 2건의 에덴교회 재판기록과 당회 의견서(별첨)는 재판에 참고하도록 하다.

- ③ 관서노회 에덴교회 관련 상소 건은 화해·조정을 위해 당사자들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차기 재판국 전체회의에서 위원을 구성토록 하다.

(8) 제8차 임원회

☞ 일 시 : 2021. 4. 15(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에덴교회 관련 상소의 건은 화해·조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다.
- 위원장: 정진모, 서기: 임재호, 회계: 김봉중, 위원: 송기섭, 현상오
- ② 이능규 씨 재심 지시의 건은 해 노회(산서노회)로 공문을 보내 재 촉구하기로 하다.

(9) 제9차 임원회

☞ 일 시 : 2021. 5. 20(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에덴교회 김은태 씨의 상소 건에 대한 김은태의 추가자료 제출 건은 담임목사 광성덕 씨의 목사부부의 (새로운)범죄혐의에 대한 것으로서 본 상소건과 별건임을 확인하다.
- ② 관서노회의 에덴교회 상소 건과 관련 된 관서노회의 입장 추가보고 3건은 받아 재판에 참조토록 하다.
- ③ 관서노회 에덴교회 이평규 씨 외 5인의 상소 3건과 관련 된 에덴교회 담임목사 광성덕 씨의 무혐의처분(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결정서는 받아 재판에 참조하도록 하다.
- ④ 산서노회의 (총회)재판국 권한에 대한 이의 건은 받아 재판에 참조토록 하다.
- ⑤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정복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관련 소위원회 보고
- 상소인 조청래 씨와 피상소인 평남노회장(김승규)은 상호 합의서(별첨)에 서명하고 조청래 씨로 하여금 상소취하서(별첨)를 제출받아 종결하였음을(제3차 조정위, 2021.4.20.) 보고 받다.
- ⑥ 관서노회 에덴교회 상소(3건)관련 소위원회 보고
- 에덴교회 당회장 광성덕 씨와 당회서기 정동환 씨를 출석시켜 화해·조정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별첨과 같이 서약서를 제출받았음을 보고받다.
- 상소인 이평규, 심장섭씨를 출석시켜 화해·조정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자신들이 본 재판국에 출석한 목적은 에덴교회당회장 광성덕 씨와 당회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며 거부 의사를 표했음을(제1차 조정위, 2021.5.13.) 보고 받다.
- ⑦ 대구노회 성명교회 이건설씨의 상소 건은 화해·조정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다
- 위원장: 정진모, 서기: 임재호, 회계: 김봉중, 위원: 이진철, 전이탁
- ⑧ 차기회의는 6.17(목) 10시 30분 총회회의실에서 하기로 하다.



(10) 제10차 임원회

☞ 일 시 : 2021. 6. 17(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대구노회 성명교회 이건설씨 상소관련 소위원회의 보고

가. 상소인과 원심원고인들이 상호 화해와 합의(별첨)를 했고

나. 원심재판국인 대구노회도 재심을 통하여 이건설 씨의 시벌을 원인무효처리 하기로 서약서(별첨)를 제출했으며

다. 이건설 씨는 대구노회의 재심 종료 후 본 재판국에 상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했음을 보고 받다.

② 판결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다.

위원 : 정진모 목사, 임재호 목사, 김봉중 장로, 서만중 목사, 정영기 목사, 남서호 목사, 신영수 장로

③ 추가경정예산 1천만원을 청원기로 하다.

④ 차기 전체회의는 2021년 9월 2일(목)~3일(금) 하기로 하되 장소는 국장에게 위임하다.

3) 조정위원회의

(1) 평남노회 조청래 씨 상소관련 조정위원회

① 제1차 회의

☞ 일 시 : 2021. 3. 23(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가. 평남노회 전 노회장 하종성 목사 외 2인을 출석시켜 별첨과 같이 상소인 조청래 씨를 해별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다.

나. 상소인 조청래 씨를 2021년 3월 30일 오후 1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토록 하다.

다. 2차 조정회의는 2021년 3월 30일(화) 총회사무실에서 회집토록 하다.

② 제2차 회의

☞ 일 시 : 2021. 3. 30(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가. 조청래 목사를 출석시켜 별첨과 같이 (조건부)상소취하서를 제출토록하다.

나. 2021년 4월 20일(화) 11시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합의각서와 상소취하서를 재 제출토록하다.

다. 차기 회의는 2021년 4월 2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하다.

③ 제3차 회의

☞ 일 시 : 2021. 4. 20(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가. 조청래 씨 상소 관련 합의서와 상소취하서를 점검하고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나. 상소인 조청래 씨와 피상소인 평남노회장(김승규 목사)은 상호 합의서(별첨)에 서명하고 조청래 씨로 하여금 상소취하서(별첨)를 제출 받아 종결하다.

(2) 대구노회 성명교회 이건설 씨 상소관련 조정위원회

①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1. 6. 10(목) 13: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가. 원심원고인 성명교회 홍순덕 씨와 현 성명교회 당회서기인 박형언 씨, 상소인 이건설 씨를 출석시켜 상호 합의각서(별첨)에 서명케 하고 성명교회 공회 앞에 쌍방이 사과하도록 (사과문 별첨)하다.

나. 원심재판을 한 대구노회 노회장과 당시 재판국장을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출석시켜 당사자 간 합의사실을 고지하고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다.

②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1. 6. 17(목) 10: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가. 대구노회 노회장 박승환 목사와 당시 재판국장이었던 장활민 목사가 출석하여 이건설 씨의 상소 건은 대구노회가 재심하여 원인무효처리 하기로 서약서(별첨)를 제출하고 본 재판국에 보고토록 하다.

(3) 평남노회 조청래 씨 상소관련 조정위원회

①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1. 5. 13(목) 10: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가. 에덴교회 당회장 광성덕 씨와 당회 서기 정동환 씨를 출석시켜 화해·조정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별첨과 같이 서약서를 제출받다.

나. 상소인인 이평규 씨와 심장섭 씨를 출석시켜 화해·조정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자신들이 본 재판국에 출석한 목적은 에덴교회 당회장 광성덕 씨와 당회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며 거부의사를 표하다.